평가대상 자산 평가 방법 신고시：신고한 방법 법정기한 내 무신고시 신고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 시, 변경신고 없이 신고방법 변경 시 □ 재고자산 - 제품 및 상품 - 반제품 및 재공품 - 원재료 - 저장품 - 원가법 개별법, 선입선출법, 후입선출법, 총평균법, 이동평균법, 매출가격 환원법 - 저가법 원가법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 - 부동산：개별법 - 기타자산 : 선입선출법 - 선입선출법(매매용부동산은 개별법)･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□ 유가증권 - 일반회사 보유 - 원가법중 ⦁개별법(채권에 한함) ⦁총평균법 ⦁이동평균법 - 원가법중 총평균법 - 총평균법･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- 투자 회사 보유 - 시가법 - 시가법 - 시가법